

# 예 산 총 칙

2008년도 간주예산 1 차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3,283,392	21,098,502
일반회계	611,891,328	18,356,740
특별회계	91,392,064	2,741,762
공기업특별회계	43,052,758	1,291,58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3,052,758	1,291,583
기타특별회계	48,339,306	1,450,17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500,916	315,027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5,334,012	160,0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553,483	106,604
수질개선특별회계	50,000	1,50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607,847	108,235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474,194	74,22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800,850	84,02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938,092	58,143
주택사업특별회계	2,132,956	63,989
농공단지특별회계	653,241	19,597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15,775	3,47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852,481	85,574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355,759	10,67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430,000	192,900
도시개발특별회계	5,539,700	166,19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76,49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인건비(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2. 지방채 상환금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

제 6 조 총액인건비제도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